

코로나19와 정보인권

- 감염병 예방법 개정이 필요한 이슈들 -

오병일 /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

감염병 위기시 개인정보 처리원칙

- 법에 근거해야 함.
- 공공보건 목적에 필요하고 비례하는 수준이어야 함.
- 기간이 한정되어야 하며,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만큼만 지속되어야 함.
-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.
- 독립기구에 의한 감독을 포함하여 인권 침해에 대비한 책임성과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함.

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의 개인정보 수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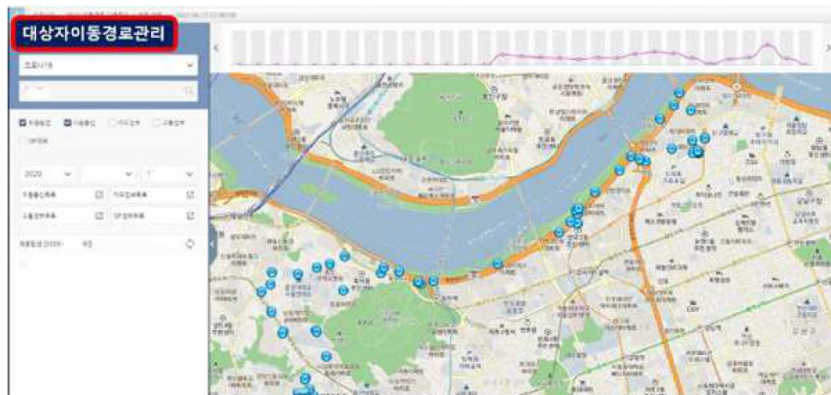
- 감염병 예방법 제76조의2(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) 1항
 - 요청권자 : 질병관리청장 및 지자체장
 - 요건 : **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**
 - 대상 : **감염병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**에 관한 개인정보
 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
 -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등
 - 출입국관리기록
 - **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정보 (시행령에 위임)**
 - 신용카드 · 직불카드 · 선불카드 사용명세
 - 교통카드 사용명세
 -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

감염병 환자의 위치정보 수집
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(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) 제2항
 - 요청권자 : 질병관리청장, 지자체장
 - 요건 : **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**
 - 상대방 : **경찰관서의 장**
 - 대상 : **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**
 - 방식 :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,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요청
- **개인정보 요청의 주체, 대상,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성.**
- **위치정보 수집을 위해 경찰관서를 통한 필요가 있는가.**
 - **국가감시의 우려, 경찰관서의 역할이 모호함.**
 - **위치정보 남용에 대한 우려를 통제하고자 한다면,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통제.**

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

- 통신사 및 카드사, QR코드 출입기록과 연계
- 출입국 기록과 연계 예정
- 법적 근거 부재
- 프로파일링의 위험성
-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했는가?
 -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
 -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
 -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 포함



기지국 접속정보의 대량 수집 문제

- 이태원 기지국 접속 정보 수집
 - 2020. 4. 24.부터 같은 해 5. 6.까지 자정에서 새벽 5시 사이 이태원 클럽 주변의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들 가운데 30분 이상 체류한 자에 대한 통신정보(이름, 휴대전화 번호, 주소정보 등) 수집. 그 대상자는 10,905명 으로 파악됨
- **감염병 의심자의 범위 모호** :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,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→ 10,905명이 감염병 의심자?
- 수집 대상 범위의 역학적 필요성 의문.
- **기지국 접속자를 감염병 의심자로 볼 수 있는가?**
기지국 접속정보의 수집을 허용해야 하는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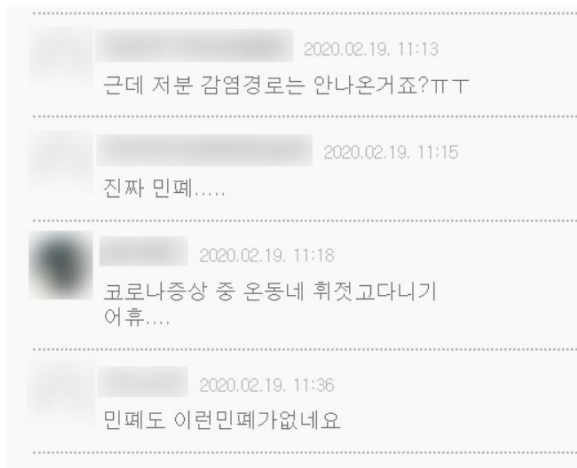
출처 : MBC뉴스 (2020.5.12)

수집된 개인정보의 파기 문제

- 감염병 예방법에 수집된 정보의 파기 규정 부재
 -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
 - 공공기관의 경우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공공기관에 등록
 -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/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/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/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/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/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/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수집된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 및 시점 모호
 - 메르스 당시 수집된 확진자 정보 보관 중
 -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개인정보 파기 약속. 그런데 '코로나19 상황 종료' 시점은 언제인가?
- 개인정보별로 보유기간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가?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?

확진자 동선공개

- 동선 공개의 목적
 -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접촉자가 있을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잠재적인 접촉자가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함.
- 동선 공개로 인해 확진자에 대한 비난과 혐오발언으로 인한 피해
- 코로나 감염보다 동선 공개가 더 무섭다!



출처 : KBS 뉴스 (2020.3.11)



출처 : 동아일보 (2020.8.29)

동선공개 방식의 개선

- 3.9.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
 -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 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 고려 요청
- 중앙방역대책본부,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, 2020.3.14. 1판
 -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
 - 거주지 세부주소 및 직장명은 비공개 원칙
 - 이미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비공개
- 2020.4.12. 2판
 - 동선 공개 기간을 ‘정보 확인 시부터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’로 규정
 -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“소독 완료함”을 같이 공지

동선공개 방식의 개선 [2]

-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,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
- 2020.6.30. 3판
 - 성별, 연령, 국적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 비공개
 -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, 장소목록 형태로 공개

참고 1

확진환자의 정보공개 표준 예시

시도	시군구	장소 유형	상호명	주소 (도로명 주소)	노출일시	소독여부
○○도	○○시	판매업	○○마트 (○○점)	○○도 ○○시 ○○길 ○○ 1층	6.29(월), 13:00~15:00	소독완료
○○시	○○구	대중교통	○○번 버스 (○○아파트~○○회관)	-	6.30(화), 13:00~13:20	소독예정

동선공개 방식의 개선 [3]

-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(1판). 2020.10.6
 -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
 -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 표준 예시 보완 : 미준수 예시 포함

<미준수 예시> 확진자별 이동경로 게시

① 유형 1

00시 #100번			
노출일시	상호명	주소	소독여부
10.5(월) 13:00~15:00	AB마트 (CD점)	00도 00시 00길12 1층	소독완료
10.5(월) 15:00~16:00	EF커피숍	00도 00시 00길34 2층	소독완료

② 유형 2

00시 #100번						
시도	시군구	장소 유형	상호명	주소 (도로명 주소)	노출일시	소독여부
00도	00시	판매업	AB마트 (CD점)	00도 00시 00길12 1층	10.5(월), 13:00~15:00	소독완료

00시 #101번						
시도	시군구	장소 유형	상호명	주소 (도로명 주소)	노출일시	소독여부
00도	00시	음식점	EF식당	00도 00시 00길34 1층	10.5(월), 13:00~15:00	소독완료

확진자별 동선공개 계속

- 각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확진자별 동선을 공개하고 있음.

연번	원차여부	확진일시	감염경로	입원시설 (입원시기)	이동경로 및 조치사항
부산4133 (#24667)	-	10.11.(월) 08:00	해외 감염 추정	연산생활치료센터 (10.11. 15:40)	단기
이동경로 및 진단경위					
시군구	장소유형	상호명(주소)	노출일시	소속여부	비고
인천시	공항	인천국제공항	10.10.(토) 07:00~09:30		* 인도, 말레이시아 경유 * 가족 2명 동반 입국 * 마스크 착용
이태원동	보건소	선별진료소 검체채취	10.10.(토) 09:30~11:00		* 입국 후 바로 보건소 이용하여 가족 2명과 검체채취(무증상) * 택시 이용 * 마스크 착용 * 해당 확진자만 양성 판정(10.11. 08:00)
조치사항					
10월 11(월)	접촉자 2명(가족) 자가격리 조치 자택 및 이동 동선 방역 완료				
<small> ※ 공개된 이동동선은 확진자의 1차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, 역학조사관 조사(CCTV, 카드사용내역, GPS 확인 등)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※ 용산구민 여러분, 우리 모두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5대 핵심수칙을 꾸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① 아프면 3~4일 집에 머물기 ②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 30초 손씻기,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기 ④ 매일 두 번 이상 환기,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지면 마스크를 가까이 </small>					

가족 4명에 대해 신속히 검사한 결과, 금일 오전 07시에 자녀 1명을 제외한 3명 모두 양성으로 나왔습니다. ※ **장원126-128번** 이외 접촉자와 동선노출자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음성이 127명, 진행 중이 14명입니다. ※ **나머지 8명 검사 진행 예정**

마지막으로, **126·127·128번 확진자**입니다. ※ **경남385-387번**
 세 확진자는 창원125번과 함께 ※ **경남384번**
 성산구에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.
 126번 확진자와 125번은 부부이며, ※ **경남385번**
 현재 증상은 없고 최초 증상도 발현되지 않았습니다.
 현재 기준, 접촉자는 1명이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127번 확진자는 125번의 자녀입니다. ※ **경남386번**
 11월 13일 두통과 인후통의 최초 증상이 발현되었으며,
 창원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입니다.
 학교관련 검사 진행사항은 별도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

동선공개의 법적 근거

제34조의2(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**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, 이동수단,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**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**성별, 나이,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**하여야 한다.

②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**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**하여야 한다.

동선공개 의 법적 근거 개선 과제

- ‘감염병 예방과 관련’ 여부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함
- 무엇을 법에 규정하고, 하위 규범에 위임할 것인가
- 정보공개 전 정보주체 당사자의 의견 수렴 필요성
- 지자체의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

자가격리자 감시 앱

- 행정안전부 <자가격리자 안전보호>앱 : 환자의 접촉자 및 입국자 대상
 - 동작감지 기능
 - 하루 2회 증상발생여부 모니터링
- 보건복지부의 <자가진단> 앱 : 입국자 중 자가격리 면제자 대상



자가격리자 감시 앱 법적근거

- 2020.9.29에 신설됨. 기존에는 ‘동의’에 기반.

제42조(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)

②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.

1. 자가(自家) 또는 시설에 격리

1의2.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

2. 유선·무선 통신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.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.

전자팔찌 <안심밴드> 도입



- <자가격리자 안전보호> 앱과 연동되는 전자팔찌
-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대상
-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,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
- 동의 기반, 사실상 강제 : 미동의시 자비용으로 시설 격리 → 법적 근거 마련 (2020.9.29)?
 - 제42조 제2항 2호가 법적 근거로 충분한지 의문
- 전자팔찌 도입의 불가피성? : 이미 자가격리이탈자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음.
- 전자감시 수단의 확대 우려 : 성범죄자 → 자가격리 이탈자 → ?

전자출입명부 시스템

-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
-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(KI-pass) 도입



출입자 명부 의무화의 문제점

- 법적 근거
 - 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
 -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음.
 - 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감염병의심자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감시
 -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추적 가능함
- 출입자 명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
- 현실적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 여부에 대한 단속 한계
- 고객의 동의에 기반한 서비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가능

독립적 감독의 필요성

-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 : 누가 판단할 것인가?
- 집행기구 외부의 독립적인 감독 필요
 - 국가인권위원회
 - 개인정보보호위원회
 - 제3의 독립기구
- 방역 정책 시행시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사전협의 명시

K-방역의 물질적 기반

- 감시사회의 물질적 조건에 대한 인식 필요
 -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개인정보 통합
 - 휴대전화 실명제
 -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의 보편적 활용
 - 전국적인 CCTV
- 더 많은 민주적 통제 필요
 -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가?
 -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→ 입법을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근거로 활용
 - 감염병 예방법 입법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/개입 필요

K-방역은 성공했는가

- 감시 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필요
 - 인터뷰에 의존하는 것보다 추가적인 개인정보 활용이 얼마나 더 효과적이었다
 - 동선공개는 잠재적 접촉자 파악에 얼마나 기여했나
- 방역 기여 요인의 균형있는 평가 필요
 - 감시 기술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방역 성공에 영향을 미침
 -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기술의 효과성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주의
-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?
 -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를 필요로 하는 한국 모델은 불가피한가
 - 감염병 환자의 최소화 vs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만한 수준의 감염병 통제
 - **감염병 대응의 효과성, 경제사회 시스템의 작동, 인권 및 민주적 가치 고려**

감사합니다.